

定 款

學校法人 青園學園

학교법인 청원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청원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청원유치원
2. 청원초등학교
3. 청원중학교
4. 청원여자고등학교
5. 청원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06(상계동)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 대장의 재산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5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의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학교회계는 학교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⑤유치원 교비 회계는 학교장이 편성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 2 (예, 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①이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2조의 2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2조의 3 (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2조의 4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2조의 5 (회의) (삭제)

제12조의 6 (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7인(이사장 1인, 개방이사 2인 포함)

감사 2인(개방감사 1인 포함)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중임가능)

2. 감사 2년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규정에 위반한 때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본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3. (삭제)

4.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한 때

5. 본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제15조의 2 (개방이사의 정수)

이사정수의 4분의1은 개방이사로 한다.

제15조의 3 (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본 학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 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15조의 5 (추천위원회) ①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를 추천함에 있어 추천위원회는 청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4인(청원고등학교, 청원여자고등학교, 청원중학교, 청원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 1인을 추천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장은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추천요청을 받거나 기타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간사는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정수의 3분의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 직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17조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 한다.

②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1조의 2 (상임이사) ①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사무조직을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의 수당 지급 방법·지급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 5 장 해 산

제3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3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 하되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4조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 제청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교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신입교사 채용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⑦이사장은 소속교원에 대하여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법인내 유지·경영 학교간의 전보 임용을 할 수 있다.

⑧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⑨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소속학교장은 교원을 휴직 및 복직에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01.>

제34조의 2 (기간제교원) ①사립학교법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단)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삭제)

④학교장은 기간제교원 채용공고 전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기간제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 (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제34조의 4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각급학교의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08.01.>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5조 (휴직의 사유) 법 제5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5. 법 제5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법 제59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법 제59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고,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중등 학교 교원에 한해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법 제5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법 제5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37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8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 규정에 의거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21.05.01.>

제39조 (직위해제 및 해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를 준용한다. ① ~ ⑧ 삭제

제39조의 2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단, 재정결함비보조학교의 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의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말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단,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삭제)

제41조의 2 (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③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당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지급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학교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심사 결정 : 임용권자는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3. 지급대상자 통지 : 지급 대상자를 결정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학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당지급대상자의 사직원제출 :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 3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삭제)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1조의 4 (교원인사위원회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유치원은 제외한다.>

제41조의 5 (인사위원회의 기능) < 삭 제 >

제41조의 6 (인사위원회의 조직) < 삭 제 >

제41조의 7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 삭 제 >

제41조의 8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 삭 제>

제41조의 9 (회의록작성) < 삭 제 >

제41조의10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삭 제 >

제41조의11 (운영세칙) < 삭 제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삭제)

제4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45조 (징계의결의 기한) (삭제)

제46조 (제척사유) (삭제)

제46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삭제)

제46조의 3 (징계의결 요구 사유통지) (삭제)

제47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삭제)

제48조 (징계의결) (삭제)

제49조 (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삭제)

- 제49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삭제)
- 제5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 제51조 (운영 세칙) (삭제)

제 3 절 재 심 위 원 회 (삭제)

- 제52조 (삭제)
- 제53조 (삭제)
- 제54조 (삭제)
- 제55조 (삭제)
- 제56조 (삭제)
- 제57조 (삭제)
- 제58조 (삭제)
- 제59조 (삭제)
- 제60조 (삭제)
- 제61조 (삭제)
- 제62조 (삭제)
- 제63조 (삭제)
- 제64조 (삭제)
- 제65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 제66조 (자격)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소속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 삭 제 >
 ④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 제67조 (임용) ①사무직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대우직원선발·전직·전보·겸임·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명예퇴직·공로연수를 말하며,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공개전형의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다.
 ③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이사장은 학교소속 일반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일정 년 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일반직원의 근속승진 임용요건을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2 (정년) 사무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단, 재정결함비보조학교의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0조3 (명예퇴직) ①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 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 5, 제70조의6, 제70조의7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1>

③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의2 (행동강령) 학교법인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71조의 3 (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장(유치원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0.11>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2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실을 두며, 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법인 사무실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73조 (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2인을 두며 여자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각각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하부조직) 고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 학교

제75조 (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초등학교

제77조 (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8조 (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절 유치원

제79조 (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②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아를 지도하고 유치원을 대표한다.

③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서기보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정 원

제80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2와 같다. <개정 2022.10.11.>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81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 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1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영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12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1조3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2조 (위원의 위촉 등) ①학교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82조의2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2조의2 (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4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1.>

②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 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위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5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 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6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제85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③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86조의2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

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87조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단,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 야영 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생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⑦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의2 (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의3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의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7조의5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87조의6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7조의7 (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의8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

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 (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88조의2 (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운영경비 등

제89조 (운영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제89조의2 (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9조의3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90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91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한국일보)신문에 공고한다.

제9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3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신복성	1913. 2. 8.	4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후포리 500
이 사	이인근	1924. 6.30.	4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번지 17호
이 사	이섭준	1915. 1.13.	2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71번지
이 사	장기엽	1908.11.15.	2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후포리 500
이 사	이호근	1926.12.20.	2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71번지

부 칙 (문보 제 419호)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5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기 제 165호)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57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기 제 784호)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5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기 제 1601호)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6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기 제 1153호)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6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관 제 223호)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6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보행 제 1042.3호)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6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보행 제 1042.3호)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6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0-6755)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7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0-98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431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결격사유 해당자)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 까지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급 잡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1040-40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과 유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풍인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청원유치원의 교직원으로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를 정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동대문상업고등학교 기능직10등급(종전의 고용원) 1인은 퇴직·전보·승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연 감소 될 때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 부터 개시하여,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직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청원정보산업고등학교에 소속된 행정실 직원의 정원은 청원여자고등학교 완성 학급 될 때까지는 이 정관에 의한 정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4조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 ③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결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임원 선임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6조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 ⑤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학교운영지원과-2076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운영지원과-1740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운영지원과-2197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지원과-4889)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정원), 별표②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①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2명

일 반 직 계 2명

4급(서기관) 1명

6급(주 사) 1명

(별표)②

학 교 사 무 직 원 정 원

구 분	청 원 유 치 원	청 원 초 등 학 교	청 원 중 학 교	청 원 여 자 고 등 학 교	청 원 고 등 학 교	계
총 계	1	16	6	9	9	41
일 반 직 계	1	16	6	9	9	41
사무관 (5급)		1		1	1	3
주 사 (6급)		1	1			2
주사보 (7급)		1		3	3	7
서 기 (8급)		1	2			3
서기보 (9급)	1	12	3	5	5	26

(별표)③

정년잔여기간	산정 기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정년 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text{월})}{2}$]
3. 10년초과인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자의 금액과 동일한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않음

(비고)

①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